

(사)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규정

제정	2001. 9. 8 이사회	개정	2010. 3. 19 이사회
개정	2003. 6. 21 이사회	개정	2016. 1. 28 이사회
개정	2005. 5. 21 이사회	개정	2018. 1. 25 이사회
개정	2006. 6. 16 이사회	개정	2019. 4. 20 이사회
개정	2008. 3. 15 이사회	개정	2024. 3. 16 이사회
개정	2008. 11.21 이사회	개정	2024. 6. 25 이사회
개정	2009. 1. 14 이사회	개정	2026. 5. 15 이사회
개정	2009. 6. 26 이사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논문 투고규정에 의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 심사기간, 논문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구성)

- ①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별로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3인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상당한 논문 또는 저술 업적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 업적을 갖춘 자로 한다.

제3조 (논문편집위원회 구성)

- ① 논문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이내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동일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의 추천으로 외국인 편집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추천하며, 논문집의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조정 및 해결책임을 진다.

제5조 (심사절차 및 기간)

- ① 논문심사는 관련 전공분야의 심사위원 3인이 수행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이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논문심사는 최대 3심까지 가능하며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가', '수정 게재', '수정 재심', '게재 불가' 네 가지 중 하나로 한다. 논문 심사위원이 수정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때에는 충분한 심사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
- ⑤ 논문게재는 3인의 '게재 가(수정 게재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하되 3인의 최종판정 중 2인의 '게재 가' 판정 때에도 게재한다. 2인의 '게재 가', 1인의 '게재 불가'의 판정 시에는 1인의 '게재 불가'의견을 다른 2인의 심사위원에게 제시해야 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을 시 게재한다. 이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도 2인의 '게재 가' 심사의견을 보내 논문이 게재됨

을 통보한다. 단, 투고된 논문이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다.

- ⑥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된 논문은 게재될 수 없으며,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통보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 ⑦ ‘수정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의뢰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 가’로 처리한다. 단,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은 재심 의뢰 후 7일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단, 심사위원이 심사기일 연기 요청을 해올 경우 재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 ⑧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 ⑨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⑩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하며, 심사의견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⑪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 제기에 따른 특별 소청위원회(편집위원장, 관련전공 편집위원)를 구성하고 30일 내에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제6조 (심사료)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7조 (논문편집)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일 전까지 논문게재가 확정되고 해당 논문의 최종본이 접수되면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한다.
- ② 접수일(Received), 수정일(Revised), 게재확정일(Accepted)을 명기한다. ‘수정일’은 주저자가 1, 2차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을 제출한 날이며, ‘게재확정일’은 최종심사에서 ‘게재 가’로 판정한 날이다.
- ③ 논문집 발행일 이후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다음 호 논문집의 편집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 ④ 논문 게재는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논문의 철회 등)

- ① 논문 내용에 심대한 오류가 있거나 연구를 제안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고의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한국건축역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게재불허, 논문삭제 등을 할 수 있다.
- ②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 받은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저작권)

- ①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 ②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